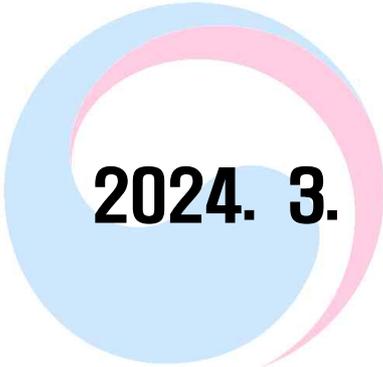

**「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개정안**



2024. 3.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목 차

I. 주요 개정사항	1
II. 개정 내용	
1. 개정 상표법 반영	2
(1) 상표공존동의제도	2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14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부분대체 인정	16
(4)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 자동 인정	19
(5)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 간주	26
(6)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대상 확대	28
(7) 기타 개정사항	29
2. 상표심사기준 정비	34
(1) 개인이 비법인단체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 시	34
붙임1 :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35

I. 주요 개정사항

- 개정 상표법(법률 제19809호, 2024. 5. 1. 시행) 반영
 - 상표공존동의제도
 - 선등록(출원)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 법 제187조의 개정으로 분할출원이 허용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부분대체 인정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체를 인정
 - 변경출원시 우선권주장의 자동 인정
 - 원출원에 우선권주장에 따른 증명서류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 시에도 이를 자동으로 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 간주
 - 심사관의 명백히 잘못된 직권보정의 경우 무효로 간주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대상 확대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대상에 제33조제1항제7호도 추가
- 상표심사기준 정비
 - 대표자 개인이 비법인단체의 명칭을 출원하는 경우의 심사처리방안 추가

II. 개정내용

1 개정 상표법 반영

1 상표공존동의제도

- 선등록(출원)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해짐
 -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업무표장 출원에 대하여는 불인정
- 출원인은 출원시부터 등록여부결정전까지 공존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
 -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에 따른 등록상표임이 표기됨

상표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보충기준1 : 상표 공존동의제

관련 법령 및 취지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5의2.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상표법시행규칙】

제27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① 출원인이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법 제55조에 따른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고자 할 경우,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상표등록출원서(의견서, 보정서도 동일하게 규정)

16. 【첨부서류】란

가.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서 제출의 경우에는 선등록상표권의 등록번호 또는 선출원상표의 출원번호, 출원상표의 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출원인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등이 명시된 상표 등록에 대한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제도의 취지】

선등록(출원)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5조 제1항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등록 후 재양도·분할이전 등 우회적 방법으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출원인의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유로운 상표사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2023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1. 공존동의서 제출 요건

1.1 시기적 요건

1.1.1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규칙 §27조의2①).

1.1.2 규칙§27조의2①에 따라 공존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기간 내에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규칙§27조의2②).

1.2 실체적 요건

1.2.1 공존동의서에는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2 공존동의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사용된 서명·인감·인장(도장)으로 한다.

2. 불인정되는 공존동의서

2.1 포괄 동의 불인정

선등록(출원)상표 또는 후출원상표가 다수인 경우, 해당 등록(출원)번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권리자에게 공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부 A를 포함하는 출원상표 일체에 대해 상표의 공존을 동의한다’ 등의 포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2 조건 불인정

기한 및 지역 제한 등의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3 표장이 동일하면서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 동의 불인정

표장이 동일하면서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 공존동의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표공존동의제 미적용 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업무표장 출원은 표장의 특성상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등 상표 공존동의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출원에 공존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1호의 정의규정 위반, 제4호의 자격규정 위반 등의 거절이유를 적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34①3(저명한 국가·공공기관 등의 업무 표시 표장과 유사), §34①11(식별력 또는 명성 희석), §34①12(수요자 기만), §34①13(부정한 목적) 등의 거절이유를 적용할 수 있다.

4. 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처리

4.1 하자 있는 공존동의서 제출 시 (필수 기재사항 미비 등)

4.1.1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기 이전에 첨부된 공존동의서 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34①7 및 §35①에 따른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할 시, 공존동의서 하자에 관한 내용도 같이 고지한다.

4.1.2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 후 의견서에 첨부된 공존동의서 상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의견서 제출기한이 경과되고 심사관의 최종 등록여부결정 전에 첨부된 공존동의서 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 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

4.1.3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적법한 공존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시에는 거절결정한다.

4.1.4 불인정되는 공존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공존동의서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처리한다.

4.2 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 시

4.2.1 적법한 공존동의서가 제출되면 해당 선등록(출원)상표와 저촉되어 발생하는 법 §34①7 및 §35①의 거절이유가 해소된다. 또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며 동의한 지정상품에 한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다.

4.2.2 공존동의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점검표에 공존동의서 제출에 의한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임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4.3 공존동의의 계약무효(취소) 등

4.3.1 출원상표의 등록여부결정 이전에는 정보제출서를 통해 공존동의의 계약무효(취소)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심사관은 이를 참고하여 심사한다.

4.3.2 출원상표의 등록여부결정 이후에는 심판절차에 따른다.

5. 유의사항

5.1 법 §34①7 및 §35①에 해당하는 선등록(출원)상표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모든 선등록(출원)상표권자에게 공존동의서를 받아야 법 §34①7 및 §35①의 거절이유가 해소된다.

5.2 공존동의서에 의한 거절이유 해소는 법 §34①7 및 §35①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타 거절이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3 동일자 출원의 경우(법§35②) 협의·추첨을 통해 선권리자를 확정된 후 공존동의제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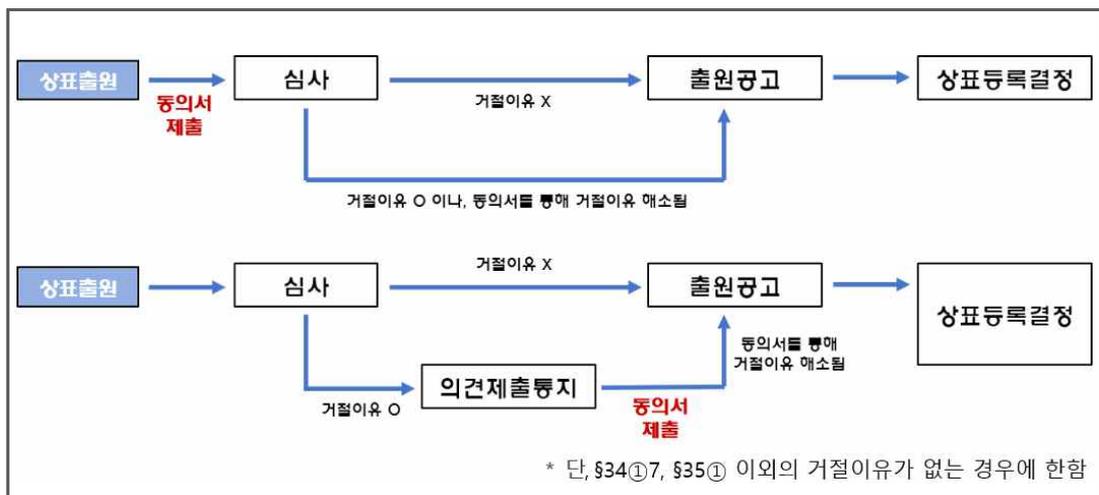
5.4 공존동의서는 법 §34①7 및 §35①에 따른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심사관이 비유사 하다고 판단하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공존동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공존동의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참고사항

6.1 선등록(출원)상표 및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후출원상표는 모두 등록 원부에 공존동의에 따른 등록상표임이 표기된다.

6.2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존속기간 갱신등록 시에 공존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존동의를 통해 후출원상표가 등록된 이후 선등록(출원) 상표권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후출원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후 심사절차도》



《상표공존동의서 예시》

상표공존동의서		
출원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번호가 없을 시, 상표건본 및 상품류 기재)
<p>아래 선등록(출원) 상표권자는 위 출원인의 상표출원·등록·사용에 동의합니다.</p> <p>○ 지정상품 :</p> <p>(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 25류, 35류 : 전부</p> <p>(예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 25류 : 수영복, 요가셔츠 - 35류 : 수영복 소매업, 요가셔츠 소매업</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선등록(출원) 상표권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 유의사항

- 선등록(출원)상표 및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출원상표는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에 따른 등록상표임이 표기됨
- ‘조건이 있는 공존동의서’ 및 ‘선등록(출원) 상표와 표장이 동일하면서 지정상품이 동일한 출원상표의 공존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음
-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출원상표는 선등록(출원)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현행 50701쪽)	개정안
<p>【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p> <p>【제도의 취지】 (생략)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에는 유사 그 자체보다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p>【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31.></p> <p>【제도의 취지】 (생략)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에는 유사 그 자체보다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시행으로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p>

【목차 및 내용】

1. 적용요건

1.3 <신설>

4. 다른 조문과의 관계

4.2 본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적용하며, 미등록 주지 또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1호를 적용한다.

5. 판단시점

5.2 부분거절결정시 일부 지정상품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부분거절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그 거절결정에서 인용된 선등록

【목차 및 내용】

1. 적용요건

1.3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시행으로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제5부 제7장 보충기준1을 참고한다.

4. 다른 조문과의 관계

4.2 본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적용하며,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한다. 또한, 법 제34조제1항제9호는 미등록 주지상표에 적용하여 본호와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5. 판단시점

5.2 부분거절결정시 일부 지정상품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부분거절결정하여야 한다. 해당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거절결정에서 인용된 선

<p>상표가 취소·무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선등록상표의 관리자와 출원인을 일치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거절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가 아니다.</p>	<p>등록상표가 취소·무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선등록상표의 관리자와 출원인을 일치시키거나, 선등록상표 관리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거절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가 아니다.</p>
---	--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23장 선출원(현행 52301쪽)	개정안
<p>【상표법】</p> <p>⑥ <신설></p>	<p>【상표법】</p> <p>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신설 2023. 10. 31.></p>

<p>【제도의 취지】 선출원주의란 2이상의 출원이 결합하는 경우 최선출원인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상표권의 성질상 어떤 특정국가의 영역 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하나의 상표만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p> <p>【목차 및 내용】</p> <p>1. 적용요건 1.4 <신설></p>	<p>【제도의 취지】 선출원주의란 2이상의 출원이 결합하는 경우 최선출원인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상표권의 성질상 어떤 특정국가의 영역 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하나의 상표만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시행으로 최선출원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목차 및 내용】</p> <p>1. 적용요건 1.4 상표공존동의제도의 시행으로 최선출원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제5부 제7장 보충기준1을 참고한다.</p>
---	--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현행 50905쪽)	개정안
【목차 및 내용】	【목차 및 내용】

<p>3. 다른 조문과의 관계</p> <p>본호는 주로 미등록 주지상표에 적용하고 선등록된 주지상표에는 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나 선등록된 주지상표에도 본호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p>	<p>3. 다른 조문과의 관계</p> <p>본호는 주로 미등록 주지상표에 적용하고 선등록된 주지상표에는 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p>
---	---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22장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현행 52201쪽)	개정안
<p>【상표법】</p> <p><제34조 제3항></p> <p>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p>	<p>【상표법】</p> <p><제34조 제3항></p> <p>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청구일부터 다음 각</p>

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	---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 권리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분할출원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 제187조의 개정으로 분할출원이 허용
 - *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의 개정('19.2.)

상표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4장 분할출원

5.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권리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분할출원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 제187조의 개정('24. 5. 1. 시행)으로 분할출원이 허용된다.

5.1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2 ①, ②

5.1.1 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국제상표분할신청불인정예고통지를 한다. 통지된 거절이유와는 별개로 분할신청의 적부만을 심사하며, 따라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과 분할신청된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국제상표분할신청 불인정예고통지는 하지 않는다.

5.1.2 출원인이 기한 내에 하자를 미보정하는 경우 국제상표분할신청불인정통지를 한다.

5.1.3 하자가 없거나 하자를 보정하여 분할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신청인정통지를 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를 송부한다.

5.1.4 분할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보정서는 승인하지 않고 대기하며, 아래 5.3.2를 참고한다.

5.2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2 ③, ④

5.2.1 국제사무국에서 분할신청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1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신청하자통지를 한다.

5.2.2 출원인이 기한 내에 하자를 미보정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의 하자 보정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상표분할신청포기통지를 한다.

5.2.3 하자를 보정하여 분할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신청인정통지를 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를 재송부한다. 단, 국제사무국에서 수수료 납부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만 송부할 수 있다.

5.3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2 ⑤

5.3.1 국제사무국에서 특허청에 분할승인 통지를 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승인통지를 한다.

5.3.2 국제사무국의 분할승인 통지 이후에 5.1.4에서 승인하지 않았던 분할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보정서를 승인하여 기초가 되는 출원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삭제한다.

5.4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해당 조항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자”로 본다. 또한,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5.1.4 및 5.3.2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부분대체 인정

- 기존에는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체를 인정
-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개정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가 포함되는 되는 경우도 대체 인정
 - * 대체 : 중복되는 지정상품은 먼저 등록된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법 제38조(1상표1출원) 위반 대상에서 제외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현행 90401쪽)	개정안
<p>【상표법】</p> <p>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p> <p>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p> <p>【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p> <p><추가></p>	<p>【상표법】</p> <p>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p> <p>3. <삭제></p> <p>【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p> <p>규칙 21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p> <p>(3) [교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p> <p>(d) 대체와 관련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지정상품과 서비스가 국제등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체는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국내지정상품 및 서비스</p>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목차 및 내용】

1. 대체의 의의

『대체(Replacement)』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이미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선등록 표장과 동일하고 동시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도 국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 안에서 국내 선등록상표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국내 선등록상표에 조약우선권이 인정되면 그 우선권의 효과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그대로 인정되며,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표와 대체되는 본인의 국내 선등록상표는 병존하게 된다.

【목차 및 내용】

1. 대체의 의의

1.1 『대체(Replacement)』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이미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선등록 표장과 동일한 경우 등 법 제183조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 안에서 국내 선등록상표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국내 선등록상표에 조약우선권이 인정되면 그 우선권의 효과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그대로 인정되며,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표와 대체되는 본인의 국내 선등록상표는 병존하게 된다.

1.2 기존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인정되었으나,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개정예 따라 법 제18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어 지정상품의 일

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대체를 인정한다.

2. 대체의 요건

2.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범위보다 넓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대체의 불인정

4.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중복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대체를 인정하지 않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직권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4.2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표등록출원시 출원인의 국내상표가 설정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상표가 선출원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체를 인정하지 않고 법 제38조 제1항의 1상표 1출원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직권가거

2. 대체의 요건

2.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대체의 불인정

<삭제>

4.1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표등록출원시 출원인의 국내상표가 설정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상표가 선출원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대체를 인정하지 않고 법 제38조 제1항의 1상표 1출원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직권가거절

<p>절통지를 하여야 한다.</p> <p>4.3 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존속기간 만료, 지정상품의 일부 포기 등으로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 일부가 소멸된 경우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이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p>	<p>통지를 하여야 한다.</p> <p>4.2 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 심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존속기간 만료, 지정상품의 일부 포기 등으로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 일부가 소멸된 경우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이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p>
---	--

④ 변경출원시 우선권주장의 자동 인정

- 원출원에 우선권주장에 따른 증명서류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 시에도 이를 자동으로 인정
-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고 있음('22.4.)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5장 변경출원(현행 30501쪽)	개정안
<p>【상표법】</p> <p>제44조(출원의 변경)</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p>	<p>【상표법】</p> <p>제44조(출원의 변경)</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p>

<p>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⑥ <신설></p> <p>⑦ <신설></p> <p>⑧ <신설></p>	<p>46조제3항·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p> <p>⑤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한 때에 그 변경출원에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에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0. 31.></p> <p>⑥ 제5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p> <p>⑦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0. 31.></p> <p>⑧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p>
--	---

【목차 및 내용】

3. 변경출원의 효과

3.2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 최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 §44⑤). 이는 출원의 변경으로 인한 이중의 출원상태를 방지하고, 변경출원이 적법한 경우라면 부적법한 최초출원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목차 및 내용】

3. 변경출원의 효과

3.2 출원인의 오인·실수 등으로 변경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최초출원에 우선권 주장 또는 출원 시의 특례 주장이 있거나 증명서류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 시에도 이를 자동으로 인정한다(법§44⑤). 이에 따른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법§44⑥).

3.3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 최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 §44⑧). 이는 출원의 변경으로 인한 이중의 출원상태를 방지하고, 변경출원이 적법한 경우라면 부적법한 최초출원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제2부 상표등록출원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현행 20606쪽)	개정안
<p>【상표법】</p> <p>제44조(출원의 변경)</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 ⑤ (생략)</p> <p>제45조(출원의 분할)</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상표법】</p> <p>제44조(출원의 변경)</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p> <p>④ ~ ⑧ (생략)</p> <p>제45조(출원의 분할)</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p> <p>⑤ 제47조에 따른 출원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p>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4장 분할출원(현행 30401쪽)	개정안
<p data-bbox="204 519 347 555">【상표법】</p> <p data-bbox="188 577 539 613">제45조(출원의 분할)</p> <p data-bbox="188 636 769 1236">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data-bbox="865 519 1008 555">【상표법】</p> <p data-bbox="826 577 1177 613">제45조(출원의 분할)</p> <p data-bbox="826 636 1407 1173">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p> <p data-bbox="826 1263 1407 1980">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p>

2021. 10. 19.>

-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9.)

【목차 및 내용】

2. 부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한 처리
2.2 (생략) 원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분할된 지정상품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출원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3. 분할출원의 효과

【목차 및 내용】

2. 부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한 처리
2.2 (생략) 원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분할된 지정상품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출원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이유로 심사보류를 하지 않는다.

3. 분할출원의 효과

3.2 출원인의 오인·실수 등으로 분할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최초출원에 우

<p>3.2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분할출원은 최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한다.</p> <p>3.3 분할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과 별개의 독립된 출원이므로 분할출원 후 원상표등록출원이 거절 또는 취하되더라도 분할출원에는 영향이 없으며, 원상표등록출원의 절차적 효력도 분할출원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된 출원에 대해서는 원상표등록출원과 별개의 출원으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p> <p>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적용의 특례</p>	<p>선권 주장 또는 출원 시의 특례 주장이 있거나 증명서류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 시에도 이를 자동으로 인정한다(법§45③). 이에 따른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법§45④).</p> <p>3.3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분할출원은 최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한다.</p> <p>3.4 분할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과 별개의 독립된 출원이므로 분할출원 후 원상표등록출원이 거절 또는 취하되더라도 분할출원에는 영향이 없으며, 원상표등록출원의 절차적 효력도 분할출원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된 출원에 대해서는 원상표등록출원과 별개의 출원으로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p> <p>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적용의 특례</p>
---	--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권리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출원분할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에 의한 분할출원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법§187).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권리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출원분할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 제187조의 개정(2023. 10. 31.)으로 분할출원이 허용된다.
---	--

5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 간주

-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잘못 할 시,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직권보정이 인정되는 문제 발생
- 심사관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출원인의 의견제출이 없더라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

제3부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제3장 직권보정(현행 30301쪽)	개정안
<p>【상표법】</p> <p>제59조(직권보정 등)</p> <p>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 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⑤ <신설></p>	<p>【상표법】</p> <p>제59조(직권보정 등)</p> <p>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 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p> <p>⑤ 직권보정이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p>

<p>【제도의 취지】</p> <p>『직권보정』이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심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p> <p>【목차 및 내용】</p> <p>2. 직권보정의 대상</p> <p>2.4 <신설></p> <p>4. <신설></p>	<p>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 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0. 31.></p> <p>【제도의 취지】</p> <p>『직권보정』이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심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심사관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할 경우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직권보정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원인의 의견제출이 없더라도 무효로 간주하는 내용을 2023년에 신설하였다.</p> <p>【목차 및 내용】</p> <p>2. 직권보정의 대상</p> <p>2.4 직권보정은 법 §40②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p> <p>4.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 간주</p>
--	---

	4.1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출원인이 별도로 의견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간주한다(법 §59⑤).
--	--

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대상 확대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은 제3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하며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는 미적용
- 판례·학설 및 심사실무에 맞추어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
 - * 제3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 및 제2호(관용명칭)는 현행과 같이 제외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현행 40901쪽)	개정안
<p>【상표법】</p> <p><제33조 제2항></p> <p>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상표법】</p> <p><제33조 제2항></p> <p>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p>

2023. 10. 31.>

【목차 및 내용】

1. 적용대상

1.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

법 제33조제1항 각호 중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33조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성질표시 표장(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2001. 7.1 부터 시행), 혼한 성 또는 명칭(제5호), 간단하고 혼한 표장(제6호) 등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충적 규정인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제7호)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제1호)과 관용표장(제2호)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목차 및 내용】

1. 적용대상

1.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

법 제33조제1항 각호 중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법 제33조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성질표시 표장(제3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2001. 7.1 부터 시행), 혼한 성 또는 명칭(제5호), 간단하고 혼한 표장(제6호),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제7호, 2023. 10. 31.부터 시행)에 한하여 인정되며,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제1호)과 관용표장(제2호)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기타 개정사항

- 조사보고서에 의한 우선심사는 상표법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 삭제(“24. 1. 시행)
-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용어 정비'에 따른 표기 변경(팜플렛→팸플릿)

제6부 심사일반

제2장 우선심사(현행 60202쪽)	개정안
<p>【상표법시행령】</p> <p>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p> <p>8.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p> <p>【목차 및 내용】</p> <p>1.2. 우선심사의 대상</p> <p>1.2.9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p>	<p>【상표법시행령】</p> <p>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p> <p>8. <삭제></p> <p>【목차 및 내용】</p> <p>1.2. 우선심사의 대상</p> <p>1.2.9 <삭제></p>

<p>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상표 등록출원</p> <p>2.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심사</p> <p>2.1.1 상표사용 사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p> <p>(ii)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p> <p>2.1.2 상표사용 준비중인 사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p> <p>(ii)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p> <p>2.2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후생략)</p> <p>○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p>	<p>2.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심사</p> <p>2.1.1 상표사용 사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p> <p>(ii)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릿,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전단지, 팜플릿,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p> <p>2.1.2 상표사용 준비중인 사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p> <p>(ii)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의 카탈로그, 팜플릿, 광고 등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p> <p>2.2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후생략)</p> <p>○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전단지, 팜플릿, 동영상 또는 인터넷 사이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에 관한 광고</p>
--	--

<p>고전단지, 팜플렛,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p> <p>2.3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이후생략)</p> <p>(ii)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나 팜플렛</p> <p>2.8 우선심사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심사신청설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출원의 우선심사신청의 경우에는 선행상표 조사의뢰된 출원임을 체크한 후 의뢰기관, 의뢰일자 등을 기재하여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심사신청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우선심사신청설명을 제출한 것으로 같음하여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설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p>	<p>전단지, 팸플릿, 동영상 또는 인터넷사이트)</p> <p>2.3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이후생략)</p> <p>(ii) 사용한 상표 및 상품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나 팸플릿</p> <p>2.8 <삭제></p>
---	--

-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의 신설 ('24. 5. 1. 시행)에 따른 통지방식 변경

제1부 총칙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현행 10501쪽)	개정안

【상표법】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31.>
 - 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31.>

1 개인이 비법인단체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 시

- 대표자인 개인이 상표권을 취득하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

제1부 총 칙

제3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현행 10203쪽)

1. 권리능력

1.5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권리능력

- 1.5.3 자연인(개인)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비법인단체)의 명칭을 출원 시, 법 §34①12을 적용하되, 대표자인 개인이 상표권을 취득하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예시 :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출원상표는 개인이 법인(단체)명칭인 ‘○○협회’의 명칭을 출원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장입니다.

- 지정상품 : 전부

※ 다만, ○○협회가 비법인단체로서 권리능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① 비법인단체라는 점과 ② 출원인이 등록받더라도 비법인단체와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령, ①은 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을 통해 ②는 비법인단체 임원 등 구성원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상표출원의 권원이 대표자인 출원인에게 있고, 상표권이 단체에 귀속된다는 확약서 등을 제출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대체(Replacement)"라 함은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상표는 제외)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인의 명의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대체(Replacement)"라 함은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상표는 제외)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인의 명의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p> <p>② (생략)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p> <p>② (생략)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25조(요지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p> <p>⑤ 사관이 (생략)</p>	<p>제25조(요지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p> <p>⑤ 담당심사관이 (생략)</p>
<p>제26조(대체신청의 처리)</p> <p>① (생략) 국제사무국에게 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6조(대체신청의 처리)</p> <p>① (생략) 국제사무국에 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제30조(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등) 분할출원(분할이전출원은 제외) 및 변경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설>

제30조(변경출원) 변경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분할출원)

- ① 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국제상표분할신청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하자를 미보정하는 경우 국제상표분할신청불인정통지를 한다.
- ② 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신청인정통지를 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 22)를 송부한다.
- ③ 국제사무국에서 분할신청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1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신청하자통지를 하고, 하자를 미보정하는 경우 국제상표분할신청포기통지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되면

<신설>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단, 국제사무국에서 수수료 납부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를 송부하고 그 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 ⑤ 국제사무국에서 특허청에 분할승인 통지를 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국제상표분할승인 통지를 한다.

제30조의3(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해당 조항의“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자”로 본다.